

2026년도 강원 지역특화형(바이오헬스·식품)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

『2026년도 강원 지역특화형(바이오헬스·식품)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』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2일
강원특별자치도지사, 강원테크노파크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 개요

- (사업 목적) 중소·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기초 및 고도화(중간 이상)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 - (지원 대상) 도내 바이오헬스·식품*분야 중소·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(고도화 18개 시군, 기초 8개 시군 대상)
 - * 지원범위: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(소재 및 완제), 생물자원 유래 의약소재 및 제품, 진단 소재 및 기기, 의료기기, 일반(가공)식품(전통식품, 청정가공식품 등) 등 제조 기업
 - (지원 내용) 정보통신기술(ICT)로 제품의 기획-설계-제조-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 -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 지원
- *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(가점 부여,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)

□ 지원 과제 및 조건

- (지원 과제) 14개사(고도화 4, 기초 10)
- (지원 조건)
 - 고도화: 목표수준별 총 2.5억원 내에서 2회(1회차 고도화→2회차 동일수준) 까지 지원하되, 회당 최대 2억원 한도, 지원비율 50% 이내에서 지원가능
 - * 단, 공고일 전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“고도화” 지원받은 기업이 ‘26년도 “동일수준” 신청시, 기존처럼 최대 0.5억원, 6개월 이내 지원 가능(동일수준 지원은 목표수준별 1회만 지원 가능)

- 기초: 신규 구축 및 동일 수준 0.8억원 이내(지원 비율 80% 이내)

지원유형	지원기간	정부 지원한도	지원 비율	구축목표수준※
고도화	최대 9개월	최대 2.0억원 이내 (단, 수준별 2.5억원 한도)	50% 이내	중간1 이상 목표설정 필수
고도화 (동일수준)				
기초	최대 9개월	최대 0.8억원 이내	80% 이내	기초 이상
기초 (동일수준)				

※ 지원기간 9개월에서 협약변경을 통한 3개월(최대) 연장 가능

※ 구축목표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 기준

< 예외 사항 >

- **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**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**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**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**“고도화” 신청 가능(예: 과거 중간1을 목표로 지원받은 기업이 초과 달성하여 ‘중간2’ 구축성공한 경우, 동 기업이 사업신청 시 중간2(고도화) 유형으로 최대 한도까지 지원가능)**
- **자체적으로**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‘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’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**“고도화” 신청이 가능**

※ [참고1] ‘26년도 사업 신청 예시별 지원조건’ 참조

○ (지역별 지원 내용) 총 14개사 (고도화 4 / 기초 10)

- 고도화(4): 도내 18개 시군
- 기 초(10): 도내 8개 시군(원주, 강릉, 태백, 속초, 홍천, 철원, 화천, 양구)

2. 신청기간 · 방법 및 자격 등

□ 신청 기간·방법

○ (신청 기간) '26. 5. 22.(금) ~ '26. 6. 30.(화) 17시까지

- ☞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~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
(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·제출·수정 불가)
- ☞ 「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- 마이페이지 - 나의 담당과제 현황」 메뉴에서 과제신청 상태 “제출완료” 확인
- ☞ 공고 미숙지,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, 접수 불가

○ (신청 방법)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 신청

- ☞ 신청 방법 :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smart-factory.kr) 접속 → 회원가입(필수) → 로그인 → 사업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
○ (제출서류)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

구분	제출서류 목록
공통 제출 (도입·공급기업)	- 사업계획서 -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: sminfo.mss.go.kr / 한국중견기업연합회: www.fomek.or.kr -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-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-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
도입기업 제출	-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('23~'25) * '25년 재무제표 대체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-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제출 -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'23~'25) *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* 시작과 종료일 동일하게 발급(예시. 2025년 : 2025.12.31.~2025.12.31.) - 최근 년도('25)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(해당시, 직접수출만 인정) *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에서 발급 - 가점 증빙 서류(해당시,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)

*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의 '알림/참여마당-자료실' 참고

□ 신청 자격

○ (도입기업) 국내 제조기업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
-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

*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) 제출 필요

○ (공급기업)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'공급기업 Pool'에 등록된 기업

* (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- 알림 /참여마당 - 공지사항'에서 "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(1077번 게시물)" 참조

○ (지원 제외 사항)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< 부적격 사항 >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▷ 휴·폐업중인 기업 | 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|
| 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| 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|
| ▷ 동일·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| |

-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 (붙임1 참조)

-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'참여제한' 중인 기업 (붙임1 참조)

※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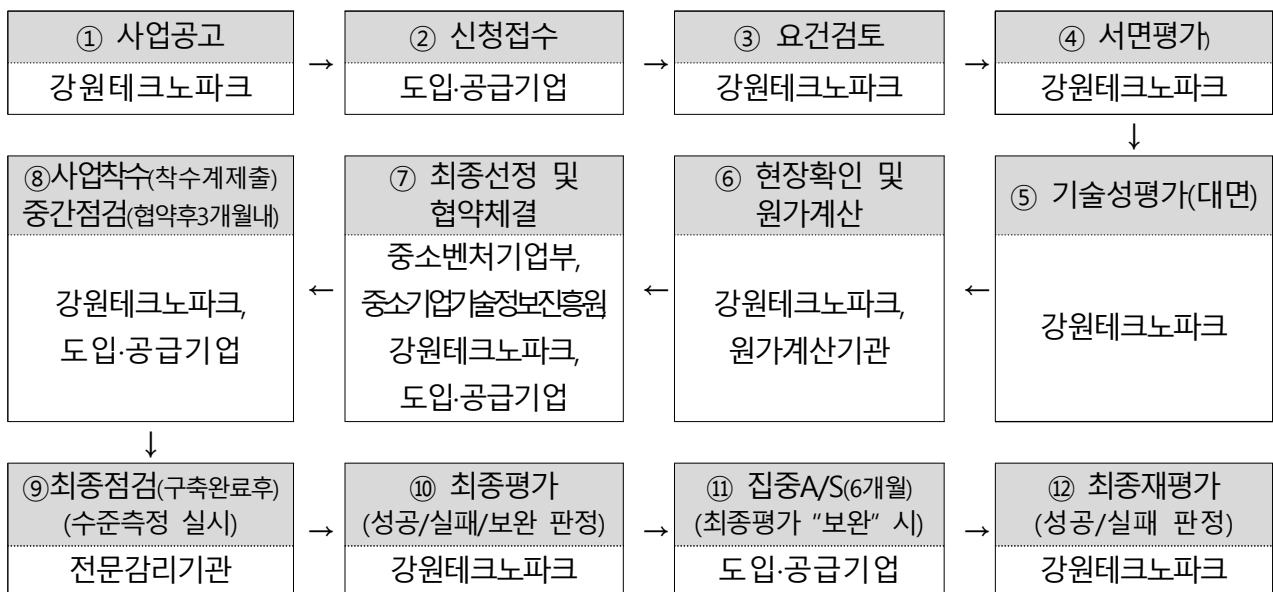
3. 평가 및 추진 절차

☞ 평가, 선정,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 절차 (붙임2 참고)

- (서면 평가)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, 지원 적정성 및 도입·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
 - *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**서면평가 생략 가능**, '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'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
- (기술성 평가)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목표·방식, 달성 가능성 및 기업 역량 등 대면 평가
- (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)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,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
 -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, 일부 예외 인정* 단, 공장설립(계획)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
 - * (예외 인정항목)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,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
- (최종 선정)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
 - ※ 단계별 평가 일정, 결과 등은 운영기관(강원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)에서 안내 예정

□ 추진 절차 * ⑩최종평가결과 "보완"인 경우 '⑪집중A/S' 및 '⑫재평가' 진행



※ 평가, 선정,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유의사항

☞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

□ 신청·접수 관련

- (컨소시엄 구성)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,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
 - 다만,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*도 가능(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)
 - *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 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

- (구축 목표 설정)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,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'동일 수준' 유형으로 신청

※ (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) '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→ 사업안내 → 도입기업 지원현황' 에서 조회 ('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)

- (보안대책 수립)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,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·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

□ 사업비 편성 관련

- (필수 비용) ①회계 정산 수수료(기초, 고도화), ②교육비(고도화), ③기술임치비용(고도화)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

① 회계 정산 수수료(기초, 고도화) :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* 정산대상: 총사업비(기업부담금 포함)

<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>

구분	총사업비 규모	표준수수료(공급가액 기준, 천원)	비고
고도화	50백만원 이하	455	부가세 제외
	200백만원 이하	637	
	400백만원 이하	910	
	400백만원 초과	1,182	
기초	-	1,000	'기타비용'에 필수 편성

② 교육비(**고도화**) : 스마트공장 기술교육(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) 수강 비용(1백만원) 필수 편성

③ 기술임치비(**고도화**) :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(45만원) 필수 편성

< 기술임치제도 >

- **(임치제도)**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,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
- **(임치효과)**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,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
- **(의무사항)**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, 구축 결과물 일체를 **2년 이상 기술임치**하고,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

※ (임치기관)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(02-368-8484, escrow@win-win.or.kr)

- (현물편성, **고도화**) 기업부담금 중 20%이내(최대 4천만원)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,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와 도입기업 인건비만 편성 가능
 -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*을 편성 가능하며,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
 - *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, 소기업 규모 기준은 [참고3] 확인
 -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
 - *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(입금확인증 등)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

□ 교육 이수(**고도화**)

-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·공급기업은 “스마트공장 교육”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
- (교육기관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(<https://ssup.kosmes.or.kr>)

<스마트공장 교육 현황>

구분	세부 내용
사업관리교육 (온라인)	- 대상 : 도입·공급기업(①대표자 및 임원, ②실무자)[각 대상기업별 2명, 총 4명] - 내용 : 사업지침, 부실·부정구축방지교육, 우수사례, 사업비 사용법 등 *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,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- 비용 : 온라인교육 무료수강

구분	세부 내용
기술교육 (오프라인)	- 대상 : 도입기업(①대표자 및 임원, ②실무자)[총 2명] - 내용 : ①CEO·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,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-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(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)

*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·운영기관·교육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

□ 기타 사항

- 동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중간점검 전까지 「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」 “구축지도” 필수 수행(기초 선택, 고도화 필수)
 - 기획지원*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를 도출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
- * 「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」 “기획지도”(∼24) 또는 「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」 “사전기획”(25∼)
-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(기초, 고도화)
 - ※ 단,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(6월·12월) 수기 등록
- 자격·유형·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, 오기재·누락·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·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(기초, 고도화)
- 온라인 신청·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(기초, 고도화)
-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 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(고도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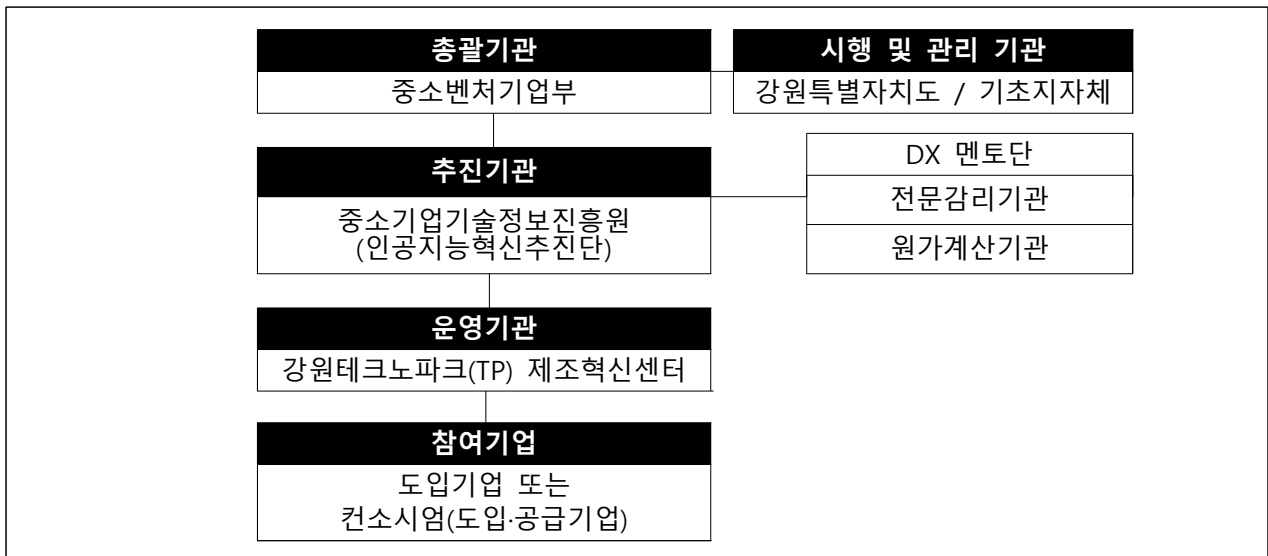
5.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(제2023-80호, '23.8.7)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

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

□ 사업 추진체계



□ 담당 기관

구분	주체	역할
총괄기관	중소벤처기업부	-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
관리기관	강원특별자치도	- 시·군 예산 및 배정 과제 수 조율 - 지자체 지원금 교부
추진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인공지능혁신추진단)	- 사업 추진계획 수립,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-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
운영기관	강원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	- 과제 신청 및 접수, 선정평가 운영, 과제 관리 등
참여기업	도입·공급기업 컨소시엄 또는 도입기업	- 스마트공장 구축

6. 문의기관

담당기관		문의사항	전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 (제조혁신과)	사업기획 관련 문의	044-204-7253
추진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인공지능혁신추진단)	사업시행 관련 문의	044-300-0955
운영기관	강원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(스마트·모빌리티팀)	신청·접수, 사업계획서 작성, 선정평가, 유의사항 등	033-248-8609

※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'사업관리시스템 - 전체메뉴(우상단) - 마이페이지 - 고객센터 - SR요청' 으로 문의

☞ 관련 웹사이트

-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<http://www.mss.go.kr>
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art-factory.kr>
- 강원테크노파크 홈페이지 : <https://www.gwtp.or.kr/gwtp>

참고

'26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설명회 안내(예정)

※ 세부 일정 및 장소 확정 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및 강원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 예정

☐ 개 요

- (일 자) '26. 06. 04.(목) 14:00~
- (장 소) 원주
- (참석자) 스마트공장 사업에 관심있는 도입기업 및 기술공급기업 등 사업관계자
- (내 용) 스마트공장 및 연계 사업 설명 등

☐ 개최 일정 및 장소

일정	세부장소
06. 04.(목)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여원로 1780 강원산학융합원 1층 회의실

붙임 1

동시수행 및 참여제한 사업 목록

☐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(기존사업 수행중인 경우)([고도화](#))

사업명(지원유형)	2022	2023	2024	2025
-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				
-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(AI트랙 제외)				
- 디지털협업공장				
-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				
-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				
- 자율형공장				
- 제조혁신 자동화(제조로봇, 제조기반)				

※ 음영이 칠해진 해당 연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, 26년 정부형 스마트공장과 동시수행 불가
 ※ 단, 집중A/S 기간이거나 사업완료(성공 판정)된 경우 신청 가능

☐ 동시 지원·선정 제한사업 목록('26년 신규 신청인 경우)([기초](#), [고도화](#))

26년 사업명	내용
① 정부형 스마트공장 (점프업 및 레전드50+, 지역특화형 포함)	①~⑨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
② 강원형 스마트공장(기초)	
③ 자율형공장	
④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(AI트랙 제외)	
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	
⑥ 디지털 협업공장	
⑦ R&D성과확산 스마트공장	
⑧ 스마트공장 수준확인	
⑨ 지역특화형 (기초, 고도화)	
⑩ 제조AI특화(자율형공장 AI트랙)	①~⑨ 사업 중 하나와 ⑩, ⑪ 사업 동시수행가능 ※ 단, ⑩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과 ③자율형공장은 동시 수행 불가
⑪ 제조혁신자동화(제조로봇, 제조기반)	
⑫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(사후관리)	①~⑪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기 구축 스마트공장에 한해 가능(단, 유·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)

□ '참여제한'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사업 목록(기초, 고도화)

사업명		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
①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		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'제재현황목록' *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- 사업관리 - 종료과제 관리 - 제재현황목록
	제조로봇도입	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-210-9532~9
	자동화공정구축	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-2183-1623~5
② 데이터 인프라구축		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'제재현황목록'
③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		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'제재현황목록'

※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,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·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**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**

붙임 2

평가 지표

□ 서면 평가지표

평가 항목		배점
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(30점)	◦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공정의 보유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?	15
	◦ 스마트공장 구축 시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?	15
지원 적정성 (35점)	◦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기초·고도화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?	15
	◦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	◦ '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능형공장' 구현을 목표로 하는가?	10
공급기업 역량 (15점)	◦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(기술력) 및 투입인력(개발PM 등)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	15
도입기업 역량 (20점, 정량평가)	◦ 매출액 증가율	5
	◦ 영업이익 증가율	5
	◦ 부채비율	5
	◦ 수출실적 여부	5
총 점		100

※ (참고) 도입기업 역량 배점기준

항목	배점				
	5점	4점	3점	2점	1점
매출액증가율	12%이상	12%미만~9%이상	9%미만~6%이상	6%미만~3%이상	3%미만
영업이익증가율	10%이상	10%미만~7.5%이상	7.5%미만~5%이상	5%미만~2.5%이상	2.5%미만
부채비율	60%미만	100%미만~60%이상	140%미만~100%이상	180%미만~140%이상	180%이상
수출실적	○	-	-	-	X

- *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매출액 증가율(1점), 영업이익 증가율(1점), 부채비율(1점) 부여
- * '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(3점), 영업이익 증가율(3점) 부여
- * '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(3점), 영업이익 증가율(3점), 부채비율(3점) 부여

□ 기술성 평가지표

평가 항목		배점
도입·공급 기업 역량 (35점)	◦ 상시 종업원 수, 매출액, 수출액(해당되는경우), 영업이익,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?	10
	◦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	◦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기초·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	10
	◦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(기술력) 및 투입인력(개발PM 등)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?	5
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(20점)	◦ 스마트공장 구축 "주요 내용"의 범위가 명확하고, "목표수준"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?	10
	◦ 수행하고자 하는 "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"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, "목표수준" 달성에 적합한가?	10
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(20점)	◦ "데이터집계 포인트"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	◦ "솔루션 기능 구성도"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?	10
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(25점)	◦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? (구축목표 - 구축내용 -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, 기존수치/목표수치의 근거제시, 지표 계산식 제시,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)	10
	◦ "추진조직 및 업무분장"과 "지원계획" 등에서 도입기업/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?	10
	◦ "추진일정 총괄표"와 "산출물 예정 목록"간의 단계가 일치하며, "산출물 예정 목록"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	5
가점(5점)	-	(5)
합 계		100

※ 동점 과제는 '①가점 제외한 총점, ②구축내용 적절성,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,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, ⑤기업역량'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

※ (참고) 가점 항목(5개)

구분	항목	세부 내용	제출 서류
1	수준확인 (고도화)	· '스마트공장 수준확인'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	수준 확인서 (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인정)
2	스마트 제조 표준 (고도화)	· 스마트제조 표준*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,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* 적용 표준 : ① OPC-UA (IEC 62541) ② AAS (IEC 63278)	사업계획서 표준연계 항목 작성 * 기술성평가에서 반영여부 확인
3	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(고도화)	·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 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%인 기업 ('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)	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
4	「글로벌강소 기업 1,000+」 (고도화)	· 「글로벌 강소기업 1,000+」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	「글로벌강소기업 1,000+」 프로젝트 지정서
5	SaaS 솔루션 도입 (고도화)	· SaaS 형태*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 * SaaS솔루션 : 클라우드 인프라 내 멀티테넌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	· CSAP(SaaS유형) 인증서 ·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서 및 상세 정보 캡처(KACI) * 인증받은 솔루션이 SaaS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 화면
6	2025년 컨설팅 사업 지원기업 (기초)	· (재)강원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추진한 컨설팅 참여기업	회의록, 컨설팅결과보 고서 등 증빙 자료
7	공급기업 소재지가 강원인 경우 (기초)	· 사업공고일 기준, 공급기업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는 경우	사업자등록증

※ 가점 항목당 3점, 최대 5점 가점 부여(최대 2개까지 인정), 가점은 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

□ 현장 확인 항목

확인 항목		확인여부
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	◦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(휴·폐업 등)	적/부
	◦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, 설비 등 일치 여부	적/부
	◦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(정상가동 등)	적/부
가점여부	◦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	-

참고 1

26년도 사업 신청 예시별 지원 조건

신청 예시	사업기간	지원한도	목표수준
◦ '25년 이전 고도화 목표(중간1) 달성한 기업이 중간1 동일수준 목표로 지원할 경우	최대 6개월	최대 0.5억원	중간1 (동일수준)
◦ 최초신청 기업	최대 9개월	최대 2억원	중간1 또는 중간2 (고도화)
◦ 기초수준 구축기업	최대 9개월	최대 2억원	중간1 또는 중간2 (고도화)
◦ '25년 이전 중간1을 지원받아 목표달성한 기업이 중간2를 목표로 하는 경우	최대 9개월	최대 2억원	중간2 (고도화)
◦ 과거 정부지원사업 구축 목표가 '중간1'이었으나, 구축 결과 '중간2' 판정받은 경우	최대 9개월	최대 2억원	중간2 (고도화)
◦ 자체비용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하여 '중간1'로 수준확인 받은 기업이 26년도 '중간1' 목표로 신청하는 경우	최대 9개월	최대 2억원	중간1 (고도화)
◦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'중간1' 구축한 후, 자체 비용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하여 '중간1'로 수준확인 다시 받은 경우	최대 6개월	최대 0.5억원	중간1 (동일수준)
	최대 9개월	최대 2억원	중간2 (고도화)

참고 2

스마트공장 수준 구분

수준구분	수준요약	상세내용	지원유형
Lv. 0	미적용	수기작성	기초
Lv. 1~2	기초	생산정보 디지털화 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, Excel 정도 활용 ② 구매·재고 등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③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<--- 공정물류관리수준(POP)	
Lv. 3	중간1	생산정보 실시간 수집/분석	고도화
Lv. 4	중간2	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	
Lv. 5	고도화	맞춤형 유연생산 지능형공장 ① 사물인터넷(IoT), 사이버 물리 시스템(CPS)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②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 서비스 공장	

참고 3

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